



15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재개발특별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경철
서 기 정래환

1. 조직

- 위 원 장 : 김경철
- 회 계 : 조평제
- 위 원 : 홍승철
- 서 기 : 정래환
- 총 무 : 김근태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10. 2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경철 목사, 서기: 정래환 목사, 회계: 조평제 장로,
총무: 김근태 목사, 위원: 홍승철 장로

② 재개발 재건축 대책메뉴얼 준비, 총회장 면담 및 성명서, 총회158개 노회장 연합 탄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및 탄원서, 국무총리 면담 및 탄원서, 서울시장, 구청장, 관할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탄원서, 범교단 300만 서명운동과 청와대 20만 국민청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3. 2(화) 14:09

☞ 장 소 : 비대면회의(카카오톡 SNS회의)

☞ 결의사항

① 재개발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하다.

-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재개발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한다.
-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 당연직으로 한다.
- 총대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이 참여가능하도록 한다.
- 전문위원 선정은 3월안에 마치기로 하다.

② 재개발관련 책자를 금년 안에 발간하기로 하다. 책자 발간부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③ 서울시 조례규범 2009년 뉴타운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1. 3. 16(화) 11: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법무법인 바름 최승환 변호사를 재개발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다.
 - ② 건축사 선임은 3월내에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1. 6. 8(화) 11: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재개발관련 자문을 위한 건축사로 박병록 장로를 선임하기로 결의하다.
 - ② 재개발관련 자문을 위한 시공사는 좀더 연구하여 선임하기로 하다.
 - ③ 가능한 전문위원 위촉식을 포함한 위원회의의 모든 안건은 6월말안에 마무리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전문위원 위촉식)

- ☞ 일 시 : 2021. 6. 29(화) 14: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점검하다.
 - ②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인사에 대하여 여비(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③ 전문위원 위촉패 수여식을 총회장 소강석 목사님을 모시고 전문위원 위촉패 수여식을 거행하다.
- 전문위원장 김경철 목사, 전문위원 박병록 건축사, 전문위원 최승환 변호사

3. 주요 활동보고

1) 재개발특별위원회 사전 활동

재개발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본 교단 합동측은 물론 통합측 등 범교단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교회의 사정과 특수성에 맞추어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여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 2021년 6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재개발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식을 가진 이후 재개발에 속한 교회들의 문의가 증가하였고 특히 본 교단의 교회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들 교회의 자료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조합들의 교회에 대한 횡포가 심하였고 교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교회는 마땅한 대처방법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먼저 전화통화로 컨설팅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상담 일정을 정하여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재개발교회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 재개발특별위원회가 두고 있는 교회들

현재 본 재개발위원회가 자문하고 돕는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합동측

- ① 성남노회 수정중앙교회(강성진 목사) : 교회 기존 대지가 40평이었는데 재개발특별위원회와 함께 조합과 합의하여 종교부지 80평 대토로 합의를 작성함.
- ② 충남노회 예산삼일교회(백도걸 목사) :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총회 탄원서,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에 있음.
- ③ 서부산노회 부산창대교회(강성덕 목사) : 재개발특별위원회와 함께하여 조합과 재판 없이 합의를 작성하여 합의에 이르게 됨.
- ④ 황해노회 인천보합교회(김영훈 목사) : 재개발 초기 단계이고 조합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돕고 있음.
- ⑤ 중경기노회 안양동산제일교회(김영만 목사) : 지주공동사업 문제로 재개발특별위원회와 위촉된 전문위원이 함께 고소건 진행 준비 중에 있음.
- ⑥ 울산노회 울산영광제일교회(김성수 목사) : 현재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초기에 조합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위촉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제시하여 조합과의 합의 추진 중에 있음.
- ⑦ 수도권노회 구리동명교회(양주성 목사) : 재개발 사업 진행이 오래되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 이르렀고 긴박하여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촉된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합과 합의를 추진 중에 있음.
- ⑧ 서평양노회 남양주신창교회(박태욱 목사) : 조합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⑨ 경평노회 꿈소망교회(황남선 목사) : 조합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⑩ 황해노회 대전영광교회(이양재 목사) : 조합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⑪ 서대전노회 대전물댄동산교회(박민하 목사) : 재개발 정비구역지정단계로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함.

(2) 예정통합측

- ① 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심상효 목사) : 조합이 2번의 강제 철거를 단행하였으나 재개발특별위원회와 함께하여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를 작성함. 현재 1,200평의 종교 부지에서 교회를 건축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② 서울동북노회 구리광장교회(김한호 목사) : 합동 총회에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있음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이 왔고 타 교단이기는 하나 건물인도 소송에 있고 긴박한 상태이므로 조합과의 합의 절차 진행을 돕고 있음.
- ③ 동대전제일노회 대전목원교회(여창순 목사) : 조합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 상설화 청원 및 예산 청원의 건

재개발특별위원회의 청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설치 청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상설화가 필요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교회에 관한 법적장치가 전무하므로 재건축조합이나 사법부에서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므로 교회의 피해가 막중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국회 입법추진 활동과 각 재건축조합들과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 2) 재개발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교회재건축사업을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야하므로 위원은 비총대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교회재개발사업은 개별 교회의 힘만으로는 정부, 지자체, 주택조합 등과의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재개발교회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교회재개발사업 중에 있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비총대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 내규 : 별첨

2. 예산청원 : 6,500만원

- 1) 재개발특별위원회 회의비 : 5백만원
- 2) 재개발대책 관련세미나 지역순회 개최 : 3천만원
- 3) 재개발대책 매뉴얼 제작 : 3천만원(사례별 자료수집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원, 매뉴얼 제작 1천만원)

2021년 9월

재 개발 특 별 위 원 회

위원장 김경철 목사

서 기 정래환 목사



[별첨]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지역내에 위치한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적 문제 등을 지원하며, 전국 재개발교회가 연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주택조합 등과 협상하는데 개별 교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위원회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위원)

1. 본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 위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비총대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

1.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1.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직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등을 본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건축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장 재 정

제8조(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교회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감사) 회계감사는 총회의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4장 부 칙

제10조(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